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1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도병두, 고영찬 의원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2. 5. ~ 2024. 2. 13.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 하여 중장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중장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안 제6조)
- 다.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7조 및 제8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중장년 창업자”란 중장년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의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 창업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중장년창업기업 등의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창업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특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지원사업 안내 등 정보제공
2. 중장년창업기업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3.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소통·교류 활성화
4. 기술 보호·개발 등 기술지원 및 세무·법률 서비스 등 경영지원
4.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자와 중장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중장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沔)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